

1. 개정이유

종합유선방송사업자(CATV)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처리방식에 종합유선방송 방송서비스에 사용하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 수정)
- 나. 제한수신 처리방식에 종합유선방송 방송서비스에 사용하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 수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(기술기준의 고시)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(권한의 위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특이사항 없음

●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-75호

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」(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-23호, 2019.12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9일
국립전파연구원장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
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표준”을 “표준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표준”을 “표준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”으로 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

현 행	개정안
<p>제8조(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"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방식(TTAK.KO-08.0027/R3)"과 "IPTV 콘텐츠 가이드 정보 및 전송방식(TTAK.KO-08.0028/R2)" <u>표준</u>을 따른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3조(제한수신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"IPTV용 교환 가능한 CAS(iCAS)(TTAK.KO-08.0023/R2)" <u>표준</u>을 따른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8조(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"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방식(TTAK.KO-08.0027/R3)"과 "IPTV 콘텐츠 가이드 정보 및 전송방식(TTAK.KO-08.0028/R2)" <u>표준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</u>을 따른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제한수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교환과 상호호환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"IPTV용 교환 가능한 CAS(iCAS)(TTAK.KO-08.0023/R2)" <u>표준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</u>을 따른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부 칙 <제2021-x호, 2021. x. x.></u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